

구립어린이집(10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및 재위탁 보고

1. 제안이유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운영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연번	시설명	소재지	시설현황		위탁체 현황		원장	보육정원	비고
			연면적(m ²)	층수	위탁체명	위탁기간			
1	독산한신 사임당 어린이집	한내로 62 12동 103호 (독산1동)	89.46	지상1층	개인/ 윤화선	16.3.1. ~ 21.2.28.	윤화선	20	재계약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2	독산2동 어린이집	시흥대로 98길 45 (독산2동)	411.64	지상 1~2층	개인/ 김화자	16.3.1. ~ 21.2.28.	김금락	75	재계약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3	또래 어린이집	금하로 793 115동 103호 (벽산A, 시흥2동)	84.99	지상1층	개인/ 김평례	16.3.1. ~ 21.2.28.	김평례	20	재계약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4	벽산꿈 어린이집	금하로 816 511동 102호 (벽산5단지, 시흥2동)	114.84	지상1층	개인/ 박은화	16.3.1. ~ 21.2.28.	박은화	20	재계약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5	유나 어린이집	금하로 816 516동 102호 (벽산A, 시흥2동)	84.97	지상1층	개인/ 임미경	16.3.1. ~ 21.2.28.	임미경	20	재계약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연번	시설명	소재지	시설현황		위탁제 현황		원장	보육정원	비고
			연면적(m ²)	층수	위탁제명	위탁기간			
6	은하수 어린이집	금하로 793 103동 101호 (벽산A, 시흥2동)	114.84	지상1층	개인/ 김금례	16.3.1. ~ 21.2.28.	김금례	20	재계약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7	하늘빛 어린이집	금하로 816 510동 103호 (벽산5단지, 시흥2동)	114.84	지상1층	개인/ 장사남	16.3.1. ~ 21.2.28.	장사남	20	재계약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8	예본 몬테소리 어린이집	독산로 22길 94 (시흥5동)	391.32	지상 1~3층	개인/ 주보영	18.3.1. ~ 21.2.28.	주보영	49	재계약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9	시흥5동 어린이집	독산로10길 24 (시흥5동)	499.41	지상 1~2층	대한예수교 장로총회 합동측 유지재단	18.3.1. ~ 21.2.28.	김봉아	82	재위탁 (변경위탁)
10	해야해야 어린이집	한내로 69-15 (독산1동)	368.93	지상1층	수도권생태 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18.4.1. ~ 21.3.31.	정오순	75	재위탁 (변경위탁)

나. 주요위탁 내용

1) 위탁업무

-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 ▶ 보육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육사업 수행
(교육·영양·건강·안전·부모에 대한 서비스·지역사회와의 교류)
- ▶ 운영시스템(CCTV등), 어린이집 관련서류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행

2)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8개소, 공개경쟁에 의한 재위탁(변경위탁) 2개소

3) 위탁기간

[국공립전환어린이집 재계약]

- ▶ 독산한신사임당어린이집 : 2021. 3. 1. ~ 2024. 2. 28.(3년)
- ▶ 독산2동어린이집 : 2021. 3. 1. ~ 2024. 2. 28.(3년)

- ▶ 또래어린이집 : 2021. 3. 1. ~ 2024. 2. 28.(3년)
- ▶ 벽산꿈어린이집 : 2021. 3. 1. ~ 2024. 2. 28.(3년)
- ▶ 유나어린이집 : 2021. 3. 1. ~ 2024. 2. 28.(3년)
- ▶ 은하수어린이집 : 2021. 3. 1. ~ 2024. 2. 28.(3년)
- ▶ 하늘빛어린이집 : 2021. 3. 1. ~ 2024. 2. 28.(3년)
- ▶ 예본몬테소리어린이집 : 2021. 3. 1. ~ 2024. 2. 28.(3년)

※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개정시 3년 → 5년 변경('20. 11월중 조례 심의 단, 전환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건물사용계약기간(만료일)과 동일함 [재위탁(변경위탁)])

- ▶ 시흥5동어린이집 : 2021. 3. 1. ~ 2026. 2. 28.(5년)
- ▶ 해야해야어린이집 : 2021. 4. 1. ~ 2026. 3. 31.(5년)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7조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1)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 2) 구립어린이집의 책임성 있는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추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7조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관 련 규 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4.12.30.>

②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3.18., 2014.12.30.>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개정 2011.3.18., 2014.12.30.>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항목 배점 및 동점 처리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3.18, 2014.12.30.>

제14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 된 기관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 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④ 재수탁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통보하되, 재위탁 부결시에는 재위탁 부결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재위탁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조항 전부개정 2011.3.18]

제17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11.3.18>

② 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신설 2011.3.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7.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개정 2016.7.18>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개정 2016.7.1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개정 2016.7.18.> [전문개정 2020.7.17]

제4조의3(구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수탁자 선정방식

6.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본조신설 2020.7.17]